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2,856,808	15,985,704
일반회계	447,363,581	13,420,907
특별회계	85,493,227	2,564,797
공기업특별회계	24,526,084	735,7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490,812	494,72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35,272	241,058
기타특별회계	60,967,143	1,829,0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88,447	56,65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25,028	15,7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8,312	60,549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40,224	10,20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61,588	25,84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943,954	118,319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62,043	82,86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9,256	3,87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92,018	14,761
도시개발특별회계	1,255,572	37,667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44,000,000	1,32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445,082	13,35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9,993	8,40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2,025,626	60,769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75,455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 물품취득비
5. 재해대책및복구경비

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은 예산 승인 된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